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변경하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를 정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방법등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켰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조항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5월 1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기존 납기는 제1기분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일시에 납세부담이 크므로 이를 분산시키고자 6월 16일부터 6월30일 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납기를 변경함. (안 제28조)
- 나.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에 있어서 중간예납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기한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일치되도록 변경함. (안 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

라. 건축물이 과세대상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일치되도록 변경함. (안 제91조)

□ 검토의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민 법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변경하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를 정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방법등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켰으며,
- 기타 관계법령 조항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